

☎04427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3[http://www.kma.org]/전화 02-6350-6582/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김기성[6574] 보험정책팀장 손용석[6571] 팀원 장운형[6587] / E-mail: mecanderj@kma.org

문서번호 대의협 제0827-06588호

기안일자 2017. 9. 29.

수 신 각 시·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 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및 관련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-9079 (2017. 9. 29)
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및 관련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해온 바, 이를 안내해 드리오니 귀 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주요내용]

가. 의료급여법 시행령

○ (노인 틀니 본인부담 완화)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(1종 20 → 5%, 2종 30 → 15%)

○ (치매환자 본인부담 완화) 의료급여 2종 치매환자 입원 및 외래(병원급 이상) 본인부담률 인하[2종 입원 10 → 5%, 외래(병원급 이상) 15 → 5%]

○ (15세 이하 아동 입원 본인부담 완화) 의료급여 2종 6~15세 이하 아동 환자 입원 본인부담률 인하(2종 6~15세 입원 10 → 3%)

* 현재 의료급여 1종 18세미만, 2종 6세미만 아동은 입원 본인부담 면제

○ (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완화) 의료급여 2종 18세 이하 수급권자 치아 홈메우기 본인부담률 인하(2종 입원 10 → 5%, 외래(병원급 이상) 15 → 5%)

나.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(고시 제 2017-181호, '17. 10. 1일 시행)

○ 노인 틀니, 치매질환 및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변경 등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명세서서식 작성요령을 규정(별표1)

○ 한방병원의 급여비용 청구서 변경사항 등 반영(별표1)

※ '17. 10. 1부 시행

※ 문의 :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/ 044-202-3089

붙임 1. 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 일부개정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81호,

2017.10.1시행) 1부.

2. 「의료급여수가의_기준_및_일반기준」_일부개정_전문(보건복지부_고시_제 2017-181호_’17.10.1일_시행) 1부.

3.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및 관련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 1부.

4.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대통령령 제28349호, ’17.9.29일 공포, ’17.10.1일 시행)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